제249회 영등포구의회 2023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檢討報告書

【전승관 의원 대표발의】

2023. 11. 27.

社會建設委員會

專門委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269호로 2023년 11월 10일 전승관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11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나. 구청장의 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3조 ~ 제4조)

라. 지원사업 및 은둔형 외톨이 발굴(안 제5조 ~ 제6조)

마.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안 제7조 ~ 제8조)

바. 비밀 준수의 의무 및 표창(안 제9조 ~ 제10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3. 8. 14.~ 8. 18.)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 사회·경제·문화적 원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곤란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으로

- 제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이고 11개의 본칙 조문과 1개의 부칙 조문으로 구성되었으며,
-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5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 관련 조사·연구, 교육 및 직업훈련 등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 안 제6조에서는 은둔형 외톨이 발굴의 주체를 구 소속 공무원,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규정하였으며,
-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서는 실태조사의 실시, 관련 통계 정보의 수집·관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 안 제9조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비밀 준수의 의무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와 안 제11조에서는 표창 및 시행규칙에 관하여 규정하였음.

○ 검토 결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고립·은둔 청년 현황과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19~34세 청년 1077만6000명 가운데 고립 청년 수는 53만8000명(5%)으로 추산되며, 이는 직전 조사인 2019년 33만4000명(3%)보다 20만명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은둔형 외톨이가 세계적인 팬데믹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증가하였고, 최근 은둔형 외톨이에 의해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를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이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가 다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입법체계나 자구에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 략)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 차(생 략)

2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6. (생 략)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22조(평생사회안전망의 구축·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생애 동안 삶의 질을 유지·증진할 수 있도록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부조를 마련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23조(사회서비스 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제24조에 따른 소득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